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3-59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 간 체결한 2023년도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간 체결한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업무대행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라 함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기타 제주자치도가 지정하는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말한다.
2.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지원사업”이라 함은 도내 마을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청·부녀회관, 어촌계사무실 등)에 기설치 태양광발전설비 고장 수리 또는 최대 15kW 이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이라 함은 도내 주택(단독주택 등)에 기설치된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 고장 수리에 필요한 점검(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보급사업”이라 함은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6. “신청자”라 함은 보급사업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또는 고장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단, 주택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점검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7. “소유자”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단, 주택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8. “설치확인”이라 함은 공사가 따로 정한 태양광발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기관 등) ①보급사업 시행기관은 공사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확인을 시행하는 기관은 공사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공사는 이 지침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②전문기업은 소관 사업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이 지침에 따라 지원 절차에 맞게 신청하며 자체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자체 부담금을 우선 확보한 다음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전문기업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 사업 공정률에 따라 투입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설치 계약서에 따라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⑤소유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설비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⑥전문기업은 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 설비의 가동상태·에너지생산량 등의 관련 자료를 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기간) 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기업은 협약의 사업기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고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은 추경예산안 사업계획 기간을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 중 전문기업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는 연장 사유를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금 단가) ①공사는 협약에 따른 사업별 지원금 단가를 시장조사와 가격예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단가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단가에 지원대상, 설치지역 등 설치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공사는 당해 연도 설비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단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시공기준 등) ①태양광발전 설비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시공기준과 시공 가이드라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 전문기업은 각 세부사업에 시공할 태양광발전설비 각도별 구조물에 대해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주 특성에 맞는 구조검토를 수행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했다는 구조계산을 받아 공사로 제출하여 사업에 착수한다.

예)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설비(5kW) 30° 구조안전확인서

※ 3.3kW 초과 건물은 해당 건물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시, 인버터 설치 장소는 신청자가 확인이 용이한 곳을 우선으로 한다.

②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기준은 [별표 1]와 같다.

제8조(전문기업 제안 및 평가) ①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급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참여제안서는 기술인력, 시공실적, 신용등급 등을 포함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 시 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참여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2. 보급사업 관련 형사사건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
3.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④제2항의 심사요소에 대한 배점 등 세부 심사기준은 공사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공사는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 공사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협약서」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보급사업 공고 및 지원방법 등) ①공사는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예비 공고 및 추가공고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직접 공고할 경우에는 별도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 공고내용에는 사업개요, 용량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에 따라 지원한다.

④공사는 사업 신청이 저조하거나 사업취소 포기 등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받을 수 있으며 사업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및 위원회의 설치) ①공사는 전문기업 선정 및 보급사업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급사업 대상 선정 평가위원회
2. 전문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②제1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별 시행지침

제1절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제12조(사업신청 및 방법) ①보급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공사에서 공시한 전문기업을 우선 선정된 후 전문기업으로부터 설치 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 검토를 받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전문기업은 신청자에게 계약관련 내용, 자부담 금액, 무상하자보수조건, 신청자의 단순 변심으로 신청 및 사업승인 취소 요청 시 당해 연도에 재신청이 불가능함 등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시공 불가 시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③신청자는 전문기업과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전문기업 상호간의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④신청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급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업을 통해 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진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급사업 (제안)견적서」 등을 같이 제출한다.

제13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제12조와 관련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자치도에서 선정된 마을공동이용시설

※ 자가발전도서(추자도, 마라도 등)는 상계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 결정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선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확인 후 설치 여건 및 예산, 건물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③공사는 사업신청 검토 완료 후 전문기업 또는 신청자에게 사업승인을 통보한다.

제14조(설비의 설치기간 및 설치확인 절차) ①전문기업은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사업승인일 이후 6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전문기업은 설치기간 내 태양광설비 설치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검사)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신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 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전문기업은 설치확인 신청 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준공 사진대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설치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업 시공자는 설치 완료 후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해당 설비의 표시사항 및 A/S 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 지급 등) 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의 설치확인이 완료된 후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사에 신청한다.

③공사는 설치확인 완료 및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원금 신청이 많을 경우 월별로 수합하여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설비의 A/S) ①2023년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설비 고장수리 및 교체(A/S)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②전문기업은 제주자치도 및 공사에서 사전 조사한 고장수리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첨부하여 공사에 신청한다.

③고장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설비에 설치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역별로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A/S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업은 공사의 요청 시 A/S를 이행해야 한다. 단, A/S미이행시 차년도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전문기업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A/S를 완료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보증기관 및 보증업체에 하자보수비용 청구에 필요한 제반의 서류를 지체 없이 발행하여야 한다.

⑤고장수리 및 교체가 완료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1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사에 신청한다. 단, 지원금 신청이 많을 경우 월별로 수합하여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주택 자가용 태양광설비 공공적 관리

제17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제18조와 관련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로부터 지원받은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자기간이 만료된 자
2.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태양광발전설비의 하자기간이 만료된 자

※ 하자기간 만료일 기준은 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른다.

②공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설비 외관 및 정상작동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설비 소유자는 희망 시 공사(또는 전문기업)에 태양광발전설비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전문기업은 태양광발전설비 점검 의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제주도 부속 도서는 7일 이내)에 점검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의 고장수리(부품 수리, 교체 등) 필요 시 신청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8조(지원금 지급 등) ①주택 자가용 태양광설비 점검 지원금 단가는 공사 기준에 따른다.

②해당 지원금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점검(출장)비에 해당하며, 점검을 제외한 모든 비용(부품 교환, 수리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에 해당한다.

③점검(출장)비는 2차 방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차 방문은 사유가 부적절할 경우(고장원인과 상관없거나 과도한 수리 등) 지원이 제한된다.

※ 단, 3차 방문 이상은 전액 신청자 부담

④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2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10-1호 서식]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⑤공사는 태양광발전설비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여부 판단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장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제19조(설비의 하자보수) ①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신청자 및 전문기업 상호간 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은 설비설치 완료 후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공사에 제출한다.

③하자보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설비의 사후관리) ①공사는 설비 설치확인 후 하자기간 동안 시공자에게 태양광발전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업은 하자기간 내에 설비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자체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해야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시공자가 실시한 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관리하고,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 업체에게는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후관리 시행기간은 각 전문기업별 하자기간을 말하며, 시행방법은 홀수 년차(1, 3, 5, ...년차)는 유선사후관리[별표 제19호 서식], 짝수 년차(2, 4, ...년차)는 현장사후관리[별지 제20호 서식]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⑤전문기업은 하자기간 내에 사후관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후관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공사 및 소유자들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설비의 책임보험 가입) ①전문기업은 시공 완료 후, 설비의 설치 확인 전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하고 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따른 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완성작업 위험 및 대위권 포기를 특약으로 가입하고 보상한도는 대인대물 일괄 1억원, 보험기간은 1년으로(의무) 한다.

- 제22조(설비의 처분제한)** ①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는 설치완료일(사용전점검(검사) 완료일 기준)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설비를 철거, 폐기, 양도할 수 없다.
- ②제1항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양도·이전·철거·폐기를 하려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거주지 이전(양도, 이전에 해당)
 2. 안전상의 문제로 설비처분이 필요한 경우(이설 또는 철거 후 재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3.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이설 또는 철거 후 재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따른 건물 사용 불가로 처분이 필요한 경우
-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태양광발전설비 처분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는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태양광발전설비 처분 승인서」와 같이 승인할 수 있다.
- ④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할 경우 태양광 모듈(온전한 상태)은 향후 보급사업 고장수리 예비자재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 ⑤제2항제2호에 따른 처분사유로 공사에 승인을 받아 설비를 폐기할 경우 본 소유자는 향후 공사에서 진행하는 보급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23조(지원금 환수) ①지원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받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기타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준한다.

[별표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기준

구 분	확 인 기 준
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 성명, 연락처, 설비용량, 설치주소 등
2. 시공 및 가동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상태 - [별지 제11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 정상 가동 여부 - 시스템 동작상태,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 ○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치 여부 -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등
3. 주요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적용 제품 사용 여부 - 설비 사양(제조국, 모델명, 용량)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된 주요 자재의 형식 및 설치 용량 적합 여부
4. 하자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 지침 제19조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5.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적정성 여부 - 가입내용 및 기간, 보장 한도 등

[별표 2] 태양광발전설비 명판 설치기준

1. 명판 도안

설비명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모듈○○W x ○EA, 인버터○○W x ○EA	
관리번호	2023-마을-0000	
증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전문기업 및 A/S책임자	시공 책임자	기업명(대표자): (주)태양기업(홍길동)
		대표전화:
		홈페이지:
	A/S 책임자	성명:
		유선전화:
		휴대폰:

※ 본 설비를 용도전환, 양도, 이전 및 폐기(5년 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주에너지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에너지공사
JEJU ENERGY CORPORATION

(064-720-7400)

- 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 재질 : 방수종이 또는 아크릴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별지 제2호 서식]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협약서

협약당사자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문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협약내용	분야		지원금단가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신규 설치)		원/kW
	주택 태양광발전(점검)		제주에너지공사 기준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2023년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전문기업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사업의 목표) (공사)가 선정한 지원금 단가로 사업기간 내에 승인사업의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승인이 있을 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협약의 체결) ①(공사), (전문기업)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전문기업)에게 통보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공사)는 (전문기업)이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사업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전문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관리) ①(전문기업)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와 (공사)가 정하는 표준설치 계약서로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협약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에게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설비 고장수리 및 주택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 점검을 (전문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업)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필요 시 사업진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준공) ①(전문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모든 승인사업의 준공을 완료하며,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준공계획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전문기업)은 차년도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공사)는 (전문기업)에게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①(공사)는 (전문기업)이 설치확인을 받은 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완료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전문기업)의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전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공사)가 정한 지침 등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전문기업)에게 기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전문기업)은 (공사)나 (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공사)와 (전문기업)은 상호 공동 협의하여 본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공사)와 (전문기업)은 상호 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전문기업)이 전기공사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관련사업의 면허를 상실했을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1조(제재조치)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고시”라 한다)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전문기업에게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안전보건의 확보) (전문기업)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의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을 따르며, 위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사)와 (전문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전문기업)은 (공사)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 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계약자와 체결한 기간 동안(5년 이상)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사후관리는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사용자 교육) (전문기업)은 소유자의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주기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변경) ①(공사)는 사업 예산이 남을 경우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마을공동 이용시설 등)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기타사항) ①(공사), (전문기업)은 본 협약의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년 월 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

(전문기업명) (대표자) (인)

비고 1. 이 협약서는 제주에너지공사와 전문기업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 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소 유 자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유선전화:	
신 청 분 야	[] 마을공동이용시설		
예 상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지원금: 원/자부담금: 원)	
설 치 규 모	kW		
전 문 기 업	기업명:	담당자:	전화:
설 치 장 소	도로명		
	지번		
활 용 목 적			
<p>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기업 (인)</p> <p>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및 약도 1부. 2.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신축건물은 건축신고필증, 건축허가서) 1부. 3.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보급사업 제안(견적)서 사본 1부. (내역서 포함) 7. 토지대장 1부. (지상형일 경우 제출) 8. 고유번호증 1부.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해당) 			

[별지 제3-1호 서식]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설비 A/S신청서				
신청사항	모듈		인버터	
	용량		설치연도	
	주소	도로명		
지번				
제품	모듈	용량:	제작연도:	
	인버터	용량:	제작연도:	
예상수리비	총수리비:		원 / 지원금:	원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전화		이메일	
전문기업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기설치 업체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가동현황	<input type="checkbox"/> 정상 가동됨 <input type="checkbox"/> 일부분만 가동됨 <input type="checkbox"/> 가동이 안됨			
A/S 내용				
년 월 일				
신청자 전문기업			(서명 또는 인)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진대장

신청자(소유자)	
설치주소	
설치위치	예시) 옥상, 마당 등



설치장소 전경



설치 세부위치



약도

[별지 제5호 서식]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신청자	<i>(신청자명)</i>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i>(건물명)</i>	주 소				
	전문기업	<i>(전문기업명)</i>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계약내용	분야	태양광	설비타입	자가용	설치용량	kW	
	공사명	설치사업(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업비 총액(A+B+C)	일금₩	원	
	설치주소	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A)	일금₩	원
		지번			(단위용량 당 지원금)	(원/kW)	
	설치기간	<i>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까지</i>		기타(C)	일금₩	원	
본문조항	<p>제1조 (자부담금 예치) ①(신청자)는 설치비용 중 지원금을 제외한 소비자 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자부담금을 (전문기업)의 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다. ②계약금(예치금)은 (신청자)와 (전문기업)이 협의 하에 정한다.(계약금(예치금)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③(전문기업)은 (신청자)의 예치금이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p> <p>제2조 (사업의 준공) (전문기업)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제주에너지공사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p> <p>제3조 (지원금) ①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설 설치 확인을 완료한 후,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공사의 지원금은 (전문기업)에게 지급되며, 단, 설치확인 시 이상이 없음에도 (신청자)가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동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후 자동 지급하기로 한다. ②(신청자)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지원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업)에게 위임한다.</p> <p>제4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전문기업)은 상호 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문기업)에게 예치된 계약금(예치금)은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단,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취소할 경우 사업 공정률에 따라 투입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5조 (지원금의 환수) (전문기업)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신청자)가 제주에너지공사의 승인 없이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양도, 이전, 폐기,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대상이 된다.</p> <p>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전문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p>						
특약조항	<p>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전문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지원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제2조 (사용자 교육) (전문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3조 (지체상금률) (전문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할 수 있다.</p> <p>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공사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p>						
	년 월 일						
	신청자 전문기업			(서명 또는 인) [인]			

[별지 제6호 서식]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서명	
주민등록 번호	123456-***** <i>(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i>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그 외의 용도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i>(전문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i>	(주)전문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계약 관련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는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는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는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제주에너지공사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주에너지공사의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이하 ‘공사 지원사업’ 이라 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공사 보급사업 신청 접수, 지원신청,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처리	<u>하자기간 완료일까지</u>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u>제주특별자치도 / 기타 공사가 지정한 대상</u>	공사 보급사업 관련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u>하자기간 완료일까지</u>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급사업 제안(견적)서(신청자 제출용)

기업명		담당자	성 명:
대표자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 -		E-mail:
주소			휴대폰:
<전문기업 제안사항>			
구 분	제안내용		
총 공사비	지원금:	자부담비:	합계:
하자보증기간	기간:	년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기간:	년	한도: 억원
	특약:		
공사 기간	사업승인(착수) 후	일 이내	
모듈 사양	용량: W	효율: % 이상	
	인증마크 또는 기관:	인증연도:	
	인증번호:	제조사:	
	모델명:		
인버터 사양	용량: W	효율: % 이상	
	인증마크 또는 기관:	인증연도:	
	인증번호:	제조사:	
	모델명:		
구조물 사양	재질:		
	도금 두께:		
	각 자재(기둥, 부재 등) 두께:		
원격 모니터링 여부	가능/불가능		
태풍 등 강풍 시 보증 풍속	기본 풍속:	m/s 이내	
기타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신청자명) 귀하			
첨부서류 - 내역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내역서					
☐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내역					
번호	시설명(내역)	규격/단위	수량	금액(원)	비고
1	재료비				주설비의 경우 모델명 기재
	-				
	-				
2	노무비				
	-				
	-				
3	경비				
	-				
	-				
4	일반관리비				
	-				
	-				
5	이윤				
	-				
	-				
6	기타				
	-				
	-				
합 계					

※ 상기 내역서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별지 제10호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신청서						
[]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청자	신청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기관명					
	연락처					
	주소					
설치 장소	건물명		관리자	연락처		
	주소	도로명				
		지번				
시공사	전문기업		담당자	연락처		
	주소					
사업용량(승인)		kW				
설치용량(실제)		kW				
사업비	총사업비		지원금		자부담금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확인사항	①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전문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관련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② 보급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전문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 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주택)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전문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③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합니다.					확인 []
	④ 전문기업으로부터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⑤ 지침 제22조에 따라 공사 승인 없이 지원받은 설비를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상기와 같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설치확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청자: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5px;"> 전문기업: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5px;"> (인) </div>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2. 하자보증서 사본 1부. 3. 사용전점검(검사) 확인증 1부. 4. 사진대장 1부.						

[별지 제10-1호 서식]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점검(A/S) 완료확인서				
신청정보	신청자(소유자)		연락처	
	구분		[] 단독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 기타()	
	주소		(도로명) (지번)	
설비정보	설비용량		kW	하자보증기간 ~
	지원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 기타()	설치년도
설치업체	업체명		연락처	
전문기업 (수행업체)	업체명		연락처	
	주소		점검자 /	
A/S 구분	1차	소요시간	시간 분	[] 단기(1시간 이하) [] 장기(1시간 초과)
	2차	소요시간	시간 분	[] 단기(2시간 이하) [] 장기(2시간 초과)
고장부위		[] 모듈(결선) [] 인버터 [] 배선 [] 접속함 [] 지지대 [] 기타()		
점검 결과		점검일시	2023. . . 시 분 ~ 시 분	
		상세하게 기재 ※ 미흡 시 점검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수행사항 및 조치 결과		수행일시	2023. . . 시 분 ~ 시 분	
		상세하게 기재 ※ 미흡 시 점검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p>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점검(또는 A/S)가 완료됨을 확인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전문기업: (인)</p> <p>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p>				
<p>첨부서류</p> <p>1. 사진대장</p> <p>2. 교통비 이용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 - 제주도 부속도서 방문에 따른 교통비 청구 시 해당</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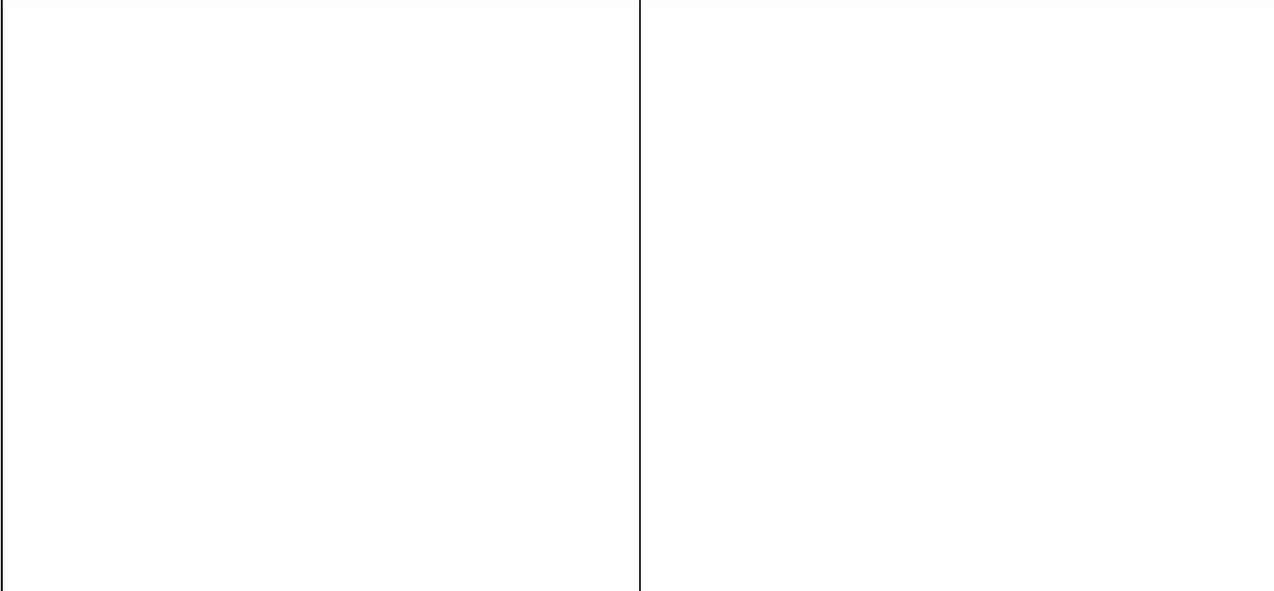
이동시간 산정 근거

<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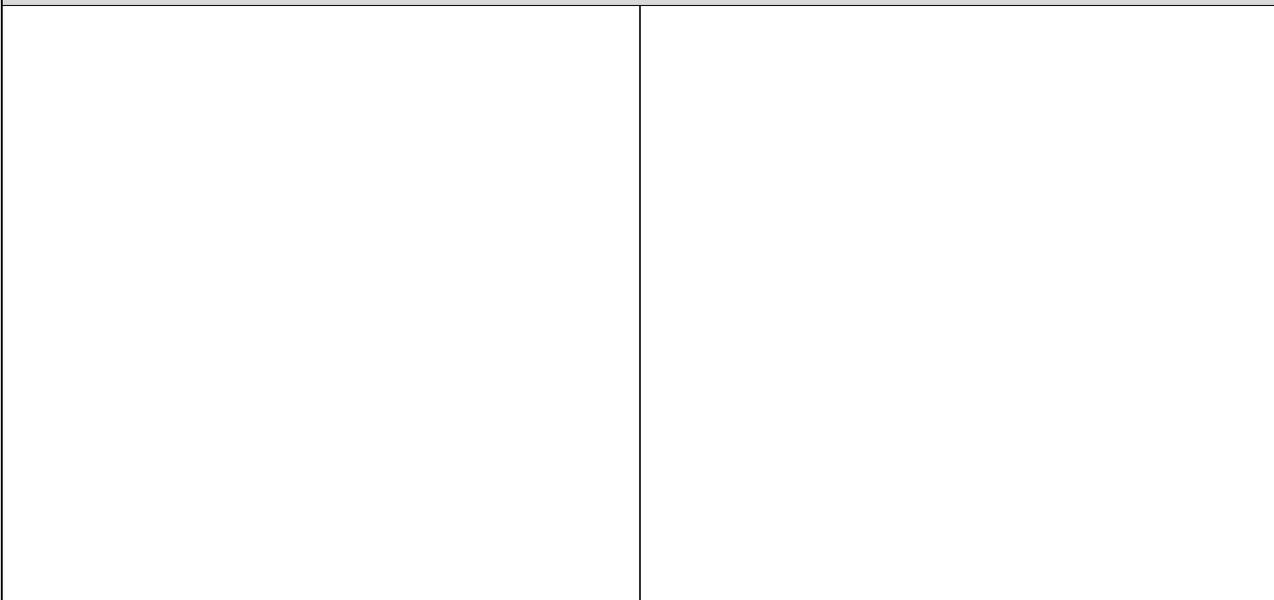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a navigation application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icons for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 자동차 (Car), 도보 (Walking), and 자전거 (Bicycle). Below these are search filters for '제주에너지공사' (Jeju Energy Company) and '제주에너지공사 CF미래관' (Jeju Energy Company CF Future Center). The main map area displays a route starting from the company location and heading towards the solar power plant site. The route is color-coded: green for the main road and yellow for the final approach. A blue callout box in the top right corner of the map indicates a travel time of '1시간 42분' (1 hour 42 minutes). On the left side, there is a sidebar with route details:

- 1종 위발류 차량 기준** (Standard for 1st kind of vehicle)
- 실시간 추천** (Real-time recommendation): 1시간 42분, 69km, 택시비 55,800원, 통행료 무료, 연료비 9,853원. Includes sub-routes: 조천우회로 10km → 일주동로 8.1km → 조천우회로 11km.
- 조천우회로 이용** (Using Jocheon Bypass): 1시간 44분, 69km, 택시비 55,700원, 통행료 무료, 연료비 9,843원. Includes sub-routes: 연성로 8.2km → 조천우회로 10km → 조천우회로 11km.

태양광발전설비 점검(또는 A/S) 전 사진



태양광발전설비 점검(또는 A/S) 후 사진



[별지 제11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 연계형 [] 독립형 / [] 고정형 [] 추적형 / [] 일반지상형 [] 건물설치형 [] BAPV [] BIPV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도, 경사각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도, 경사각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 평지붕 [] 경사지붕 [] 주차장/마당 [] 기타()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1)	수량	W × 매			
	직렬수(단)	()직렬	병렬수(열)	()병렬	
설치 모듈(2)	수량	W × 매			
	병렬수(단)	()직렬	병렬수(열)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시 분		
	확 인 항 목		외기온도(℃) 날씨()		
	인버터1		전압AC(V), 전류AC(A), 주파수(Hz), 일사량(W/m ²)		
	인버터2		전압AC(V), 전류AC(A), 주파수(Hz), 일사량(W/m ²)		
	인버터 출력	인버터1	kW (시 분)		
		인버터2	kW (시 분)		
가동 후 총 누적발전량	인버터1	kWh, 총 가동일 ()일			
	인버터2	kWh, 총 가동일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태양광발전 모듈	○모듈 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서류 및 육안확인	○KS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모듈 온도 상승에 따른 건축물 부자재 파괴방지, 발전량 저감 최소화 방안 수립 여부(BIPV) ○방수계획 수립 여부(BIPV)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모듈 전면	○모듈매수확인	○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모듈 전면	○육안 확인	○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설치장소	○육안 확인 ○구조안전 확인서 등 서류 확인 (해당 시)	○주택 및 건물 등 구조물에 설치 시 설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재구조물 등에 직접 고정여부 확인 - 직접 고정이 아닐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 확인 필요(지지대 및 지지대-건축물 고정부위 등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정성, 적정성을 확보한 내용 포함) ○(건물설치형 및 BAPV형) 3.3kW를 초과할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확인 필요 ○건물마감선(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부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 ○BAPV형 설치시 이격거리 - 모듈 프레임 밀면(프레임 없는 방식은 모듈의 가장 밀면)-지붕면 및 외벽의 이격거리 최소간격 10cm이상 여부 ○지상형의 경우, 콘크리트 기초로 시공 및 지표면 위에 자재(베이스판, 볼트류, 볼트캡 등)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지지대 후면	○서류 및 육안 확인	○건축구조기준 등의 관련 기준에 맞게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 진동, 충격에 대해 안전한 구조로 설치 ○고정볼트에 모듈 제조사 권장 규격 적용, 스프링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 균열 발생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Mill Sheet 확인	○ 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도금 -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 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해당 시) ○ 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	○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재질 사용 (볼트캡은 플라스틱 재질도 가능) ○ 제규격의 볼트, 너트, 와셔 삽입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인버터 배선	○ 설치장소	○ 육안 확인	○ 모듈전용선 또는 단심(IC) 난연성 케이블(TFR-CV, F-CV, FR-CV 등) - 지면 위 설치 또는 지면포설시 피복손상 방지조치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또는 몰드)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모듈 배선	○ 모듈 후면	○ 육안 확인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 가공전선로 지지물 설치 ○ 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배선 보호를 위해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전선처리 여부 (BAPV)	[] 적합 [] 부적합 [] 제외
		케이블	○ 설치장소	○ 육안 확인	○ 가능한 음영지역,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 ○ 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태로 포설, 피뢰도체와 교차시공하지 않도록 설치 ○ 바닥에 노출되는 경우 몰딩 등의 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속함	○ 접속함	○ 육안 확인	○ KS 인증제품 ○ DC용 퓨즈(gPV 타입)시설 및 DC차단기(또는 계폐기) 설치 및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설비 이상(異常)현상 시 경보등 또는 경보장치 켜지는지 확인(실내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 직사광선 노출이 적고, 접근 및 육안확인 용이한 장소 설치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일체형
4	인버터	사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KS 인증제품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 용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설치상태	○ 설치장소	○ 실내·실외용 확인	○ 실내·실외용을 구분하여 설치 - 실외용은 실내에 설치 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 인버터 및 모듈	○ 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 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 설치 용량의 105%이내 ○ 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 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 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 육안 확인	○ 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최대출력량(Peak), 누적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 인버터 전면 또는 차단기함 내부 ○ 육안 확인	○ [별표 2]태양광발전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50kW이상 또는 해당시)	정상작동	○ 인버터	○ 육안확인	○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 인버터, 전력량계 등	○ 육안 확인	○ 모든 설비(인버터, 전력량계 등) 정상작동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 점검현장	○ 신청자와의 면담	○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설치확인		○ 점검현장	○ 육안확인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 공간(이동통로, 발판 등) 및 접근장치(계단 등)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10	기초지반	○ 점검현장	○ 육안확인	○ (일반지상형) 태양광설비 기초 구조물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 등 적정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일반지상형) 충분한 다짐을 통한 기초 지반의 지지력 및 안전성 확보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신청자(소유자): (서명 또는 인)

전문기업명:

- 직책(직급):

- 현장확인자:

(서명 또는 인)

준공 사진대장

신청자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1. 전경 사진(설치 전)



2. 전경 사진(설치 후)



3. 설치 현장(설치 전)



4. 설치 현장(설치 후)



5. 앵커 작업(케미컬 주입 포함)



6. 모듈 명판



7. 구조물 하단



8. 볼트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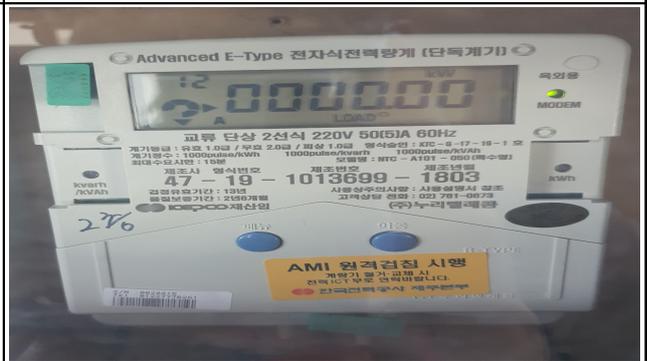
9. 모듈 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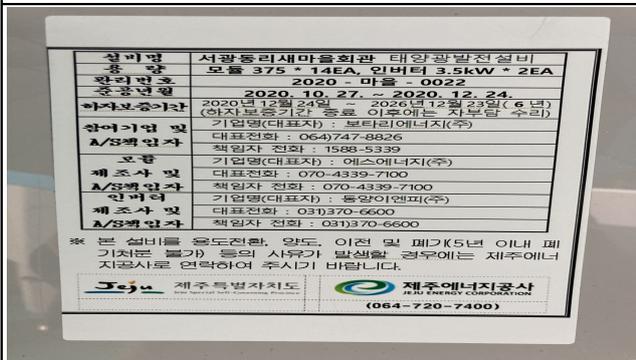
10. 인버터



11. 인버터 명판



12. 계량기



13. 통합 명판



14. 운전 매뉴얼 제공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서

관 리 번 호 : 제 호
사 업 명 :
설 치 장 소 :
소유자(관리자) :
전 문 기 업 :
설 비 내 역 :
- 설 비 명 :
- 사업용량(승인) :
- 설치용량(실제) :

귀하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대하여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지침에 의거 설치확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소유자(관리자)는 향후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 비고 1. 이 확인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인 신청에 대한 결과입니다.
2. 이 확인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당 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지원금 지급 동의서

2023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또는 A/S) 완료를 확인하였고 이에 지원금이 전문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 ① 신청자 / 연락처:
- ② 설치장소:
- ③ 사업명:
- ④ 전문기업:
- ⑤ 전문기업 담당자:
- ⑥ 주요사항:

(금액: 원)

설치용량	총사업비	지원금액	비고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처분 신청서 ([]양도 []이전 []철거 []폐기)				
신청자	성명 (건물명)			
	연락처			
	주 소			
설치 장소	설비소유자		연락처	
	주 소			
설비 내역	관리번호			
	설치일	년 월 일	용량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예정일	년 월 일			
<p>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처분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귀하</p>				

※ 양도 시 첨부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수인) 1부, 건축물대장 1부,
양도양수증(별도양식없음) 각 1부

[별지 제18호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처분 승인서 ([]양도 []이전 []철거[]폐기)				
신청자	성명 (건물명)			
	연락처			
	주 소			
설치 장소	설비소유자		연락처	
	주 소			
설비 내역	관리번호			
	설치일	년 월 일	용량	
처분 사유				
처분 내용				
처분 예정일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태양광발전설비의 처분을 승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 </div>				

[별지 제19호 서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확인표(홀수 년차 유선확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확인표

1 설비 대상

* 유선확인 실시

소유자	
소유자 연락처	
통화 시간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
시공기업 유선 확인자	

2 기본정보

현 사용자		설치장소(주소)	
연락처		관리번호	
원 사용자		시공기업	
설치일자		하자보증종료일	
제품정보	인버터 예시)MVP-2245, 다스테크	모듈	예시)LG-25522314, LG전자

3 시설 사용현황

사용상황	<input type="checkbox"/> 정상사용 <input type="checkbox"/> 고장 수리중 <input type="checkbox"/> 사용정지(<input type="checkbox"/> 고장 <input type="checkbox"/> 폐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분	2022년 이전 고장 이력	2023년 고장 이력	
고장 빈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____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____회)	
주요 수리내역			
세부원인			
고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모듈 <input type="checkbox"/> 배선 <input type="checkbox"/> 인버터 <input type="checkbox"/> 지지대 <input type="checkbox"/> 차단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모듈 <input type="checkbox"/> 배선 <input type="checkbox"/> 인버터 <input type="checkbox"/> 지지대 <input type="checkbox"/> 차단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A/S 조치 결과 (사용상황이 고장인 경우만 작성)			

상기 작성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선확인자(전문기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 서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확인표(작수 년차 현장확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현장확인표

설비 대상

* 현장확인 실시

기본정보

현 사용자			설치장소(주소)	
연락처			관리번호	
원 사용자			시공기업	
설치일자			하자보증종료일	
제품정보	인버터	예시) MVP-2245, 다스텍	모듈	예시) LG-25522314, LG전자

시설 사용현황

사용상황	<input type="checkbox"/> 정상사용 <input type="checkbox"/> 고장 수리중 <input type="checkbox"/> 사용정지(<input type="checkbox"/> 고장 <input type="checkbox"/> 폐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구 분	2022년 이전 고장 이력	2023년 고장 이력
고장 빈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____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____회)
주요 수리내역		
세부원인		
고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모듈 <input type="checkbox"/> 배선 <input type="checkbox"/> 인버터 <input type="checkbox"/> 지지대 <input type="checkbox"/> 차단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모듈 <input type="checkbox"/> 배선 <input type="checkbox"/> 인버터 <input type="checkbox"/> 지지대 <input type="checkbox"/> 차단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A/S 조치 결과 (사용상황이 고장인 경우만 작성)		

상기 작성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자) :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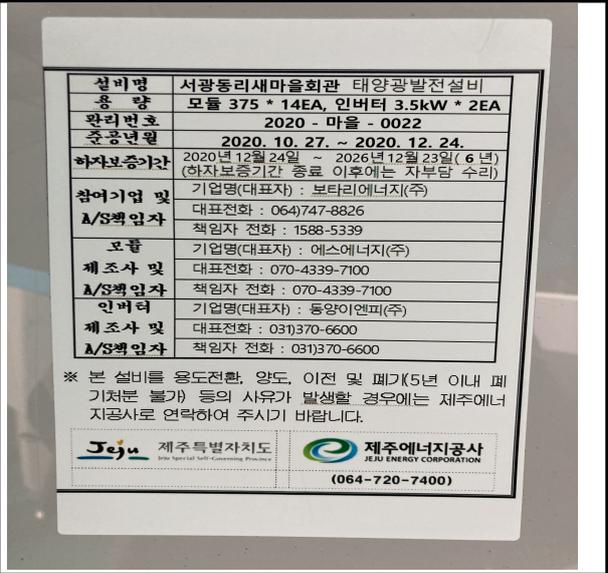
현장확인자(전문기업) : (서명 또는 인)

☐ 태양광 설비 사진

* 필수 첨부



설치 전경 사진(설치장소포함)



통합명판 사진



설비 전체 사진



인버터 사진